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함.(안 제2조제1호)
- 소각시설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함.(안 제6조 삭제)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p> <p>○ 조례 제3조 중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축소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p> <p>○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공동주택 자동집하시설과는 관계가 없는지?</p>	<p>○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p> <p>○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p> <p>○ 공동주택 자동집하시설 설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p>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5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함.(안 제2조제1호)
- 나. 소각시설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함.(안 제6조 삭제)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를 “법 제6조제1항의”로 한다.

제4조 단서외의 부분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11조중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 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로서 환경오염 방지사설을 갖추 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 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①부천시에서 조 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 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 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 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p>	<p>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 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p> <p>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한다.</p>	<p>〈삭 제〉</p>
<p>제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등)</p> <p>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와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p> <p>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삭 제〉</p>